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83-124
<https://doi.org/10.29212/mh.2018..10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이라크 전쟁을 통해 본 미군의 전시(戰時) 문화재 보호의 한계와 제국주의

김경민*

1. 서 론
2.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발달과 <헤이그 협약>의 의의와 한계
3. 미국의 전시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 육군 야전교범(FM 27-10)을 중심으로
4. 군사-고고학 복합체(military-archaeology complex)와 미국의 19세기식 제국주의의 유산
5. 결 론

1. 서 론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 전쟁(2003.3-2011.12,

* 해군사관학교 시간강사

Iraq War, Operation Iraqi Freedom)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4월 9일, 미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하면서 후세인 정권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점령군으로서 수도를 재건하고 이라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려 했던 미군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했다.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무정부 상태의 바그다드에서 약 3일에 걸쳐 대규모 문화재 약탈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바그다드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문서보관소, 종교도서관이 약탈당했고, 시내의 수많은 건물들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약탈 사태는 바그다드로 그치지 않고, 이라크 전역에 걸쳐 주요 유적지들에서 수년간 지속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소요 사태 및 대규모 문화재 약탈 사태를 바그다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지상군이 막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점이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문화재 파괴를 방관한 미군과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여론으로부터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특히 2001년 탈레반에 의한 바미안 석불 파괴가 자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또 다른 세계적 문화유산의 파괴 행위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오늘날 이라크 영토는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주요 국가들인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시리아가 거쳐 간 땅으로 이라크 전역이 유적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토 전역에 중요한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또한, 바그다드는 이슬람 시대 아바스 왕조가 번성한 곳이자 아시아와 지중해를 잇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그다드는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로 평가받아왔다. 따라서 바그다드 문화재 약탈 사건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전시 문화재 보호의 법적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이번에는말로 정치적, 법적, 도덕적 논의를 통해 정부, 군, 민간이 실천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특히 문화재 파괴와 약탈의 상당 부분이 전쟁 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군의 역할과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학술적 주체는 크게 고고학과 국제법학계가 있다. 고고학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문화재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다. 특히 2000년 전후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로 인한 문화유산의 파괴는 고고학자들이 서구 제국주의와 문화재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¹⁾ 국제법학계는 문화재 약탈과 불법 거래 금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주체이다. 특히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미군의 교범들은 대부분 기존의 국제법들을 참고하고 있으므로 전시 문화재 보호와 국제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이 두 학계는 2003년 이라크의 바그다드 약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전시 문화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전쟁 발발 시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며 여기서 고고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고학계의 논의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군 조직의 특성상 고고학자가 전시 군 조직에 편입되거나 군과 협조하여 문화재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²⁾ 다른 한 측은 고고학자가 군과 협력하는

1) 고고학계에서 문화재 약탈과 보호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으로 고찰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Margarita Díaz-Andreu, *A World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Archaeology: Nationalism, Colonialism, and the P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Donald M. Reid, *Whose Pharaohs? Archaeology, Museums, and Egyptian National Identity from Napoleon to the First World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2) John Curtis, "Relations between Archaeologists and the Military in the Case of Iraq-Reply to Price", *Papers fro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19 (2009), 2-8; Joris D. Kila,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Military Operations: The Case of Uruk, Iraq",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13 (2011), 311-333; Peter Stone, "Archaeology and Conflict: An Impossible Relationship?",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것이 학자 윤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과 함께 학자들이 동행하여 활동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이로 인한 희생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형태로 비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고학자라는 직업은 특정 유물을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인류가 남긴 문화적 발자취를 존중하는 직업인데 군, 특히나 미군과 같은 점령군과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문화적 총체를 보호한다기보다, 군과 정부를 위해 특정 유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³⁾

고고학계가 학문의 특성상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접적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제법학계는 문화재의 파괴를 금지하고 보호를 의무화하는 강제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은 국가들 간의 조약이라는 특성상 국내법과는 달리 실효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전쟁을 통해 문화재 파괴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만큼, 국제법 학자들은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1954년 헤이그 협약(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이하 헤이그 협약)>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 조항의 구체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⁴⁾

Sites 11 (2009), 315–332; Rene Teijgeler,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in Times of Conflict”, G.E. Gorman and Sydney J. Shep, eds., *Preservation Management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London: Facet Publishing, 2006), 133–165.

3) Yannis Hamilakis, “Iraq, Stewardship and ‘the Record’: An Ethical Crisis for Archaeology, Public Archaeology”, *Public Archaeology* 3 (2003), 104–111; The “War on Terror” and the Military–Archaeology Complex; Iraq, Ethics, and Neo–Colonialism, *Journal of the World Archaeological Congress* 5 (2009), 39–65; O. Tamima, “Mourad, An Ethical Archaeology in the Near East: Confronting Empire, War and Colonisation”, Yannis Hamilakis and Philip Duke eds., *Archaeology and Capitalism*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2007), 151–168.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들에 더해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된 배경과 미군의 전시 문화재 보호 규범의 근저에 깔려있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미군이 바그다드 약탈 사태로 인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이후의 전쟁은 과거와는 달리 전략적 목표만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전쟁 지역의 인권과 문화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책임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군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과 한계를 고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시 문화재 보호 방안과 이를 위한 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성립 과정과 <헤이그 협약>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이라크 전쟁 시 미군의 전시 문화재 보호 방안의 이론적 한계를 검토하고, 미군이 지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의 육군 야전교범(Field Manual 27-10: The Law of Land Warfare, 이하 FM 27-10)⁵⁾에 나타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의 법적 의무 조항과 한계를 분석하여, 이라크에서 벌어진 미군의 방관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한계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 배경을 문화재와 고고학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이라크 전쟁 시 군과 함께 문화재 보호에 참여한 고고학자의 역할을 학계 내의 찬반 논쟁을 통해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궁극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문화재 문제에

4) Ana F. Vrdoljak, *International Law, Museums and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5) 총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교전, 전쟁 포로, 부상자와 병자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을 구성하는 구체적 항목들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한 국제협약들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관련하여 이전 시대 유럽 열강들의 유산인 19세기식 제국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신제국주의(Neo-imperialism)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2.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발달과 <헤이그 협약>의 의의와 한계

서구 역사에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전쟁, 특히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민지의 문화재를 약탈하기만 했던 유럽 열강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예술품과 역사적 유물들을 약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벌어진 나폴레옹 전쟁과 20세기 전반기의 제1, 2차 세계대전은 열강들 간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재 약탈 사례를 보여주었다. 나폴레옹은 대(對)유럽 전쟁을 치르면서 주변 국가들의 예술품을 군대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파괴로 실어온 거의 최초의 인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19세기와는 다른 진일보한 무기가 등장함으로써 각국의 박물관과 유적지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양상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고, 결정적으로 예술품 약탈에 치밀한 계획과 상당한 군사력을 동원한 히틀러의 전쟁 범죄는 종전 이후 문화재 보호, 특히 전쟁 시 벌어지는 약탈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렇다면 이전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전쟁 시 패전국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약탈하는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어 왔다. 로마법에 따르면 적의 재산은 승리자의 것이었고, 이후 전시 약탈의 정당성이 관습화되었기 때문이다.⁶⁾ 중세에

는 무분별한 약탈을 막기 위해 ‘정당한’ 전쟁에 한해서만 약탈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휴머니즘이 등장하고 예술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면서, 1553년에는 전쟁 약탈품에서 예술이나 문학작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 조항까지 나타났다. 17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인식이 전후조약에 반영되어 문화재 반환의 내용이 포함되어 실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⁷⁾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의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1625)』은 근대 국제법에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그는 이 책에서 전쟁 시 상대방의 예술적 건축물과 미술 작품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적을 약화시키지도, 아군에게 유리하지도 않은 무익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⁸⁾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소수에 불과했고, 여전히 승자의 약탈 행위를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계몽주의의 시대였던 18세기에도 여전히 약탈의 관행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예술품과 뛰어난 건축물들을 여타 사유 재산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⁹⁾

그리고 마침내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의 종결로 체결된 전후 평화조약

6) 기원전 1세기 로마공화정 시대에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BC 43)가 시칠리아의 예술품과 역사적 유물들을 수탈한 총독 베레스(Gaius Verres)를 문화재 절도로 기소하여 승소해 반환한 최초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이후 일반적 것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Margaret M. Miles, *Art as Plunder: The Ancient Origins of Debate about Cultural Proper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7) Wojciech Kowalski, “Types of Claims for Recovery of Lost Cultural Property”, *Museum* 228 (2005), pp.86-87.

8) Roger O’Keef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Armed Confli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6.

9) Patty Gerstenblith,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International Treaties of Armed Force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n Times of Armed Conflict”, Laurie Rush, ed., *Archaeology, Cultural Property, and the Military* (Woodbridge: Boydell Press, 2010), p.5.

이었던 빈 협약(Congress of Vienna)은 전시 문화재 보호조약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여기에는 전쟁 시 약탈된 물건의 조건 없는 반환이라는 국제법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¹⁰⁾ 또한 승전국이 패전국의 미술품이나 보물을 약탈해도 된다는 그동안의 관례는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영국의 웰링턴 공작(Arthur Wellesley, 1st Duke of Wellington, 1769-1852)이 “문명국가들(civilized nations)” 사이의 약탈을 금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상당 부분 사라졌다.¹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시 문화재 약탈의 금지가 “문명국들”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럽 열강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들이 문명국이 아니라고 여겼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문화유산을 대규모로 약탈했다. 오늘날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꼽히는 영국박물관¹²⁾과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유명 전시물들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 확장 과정에서 약탈한 것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결은 문화재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잣대가 없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전후 혼란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보호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규정하는 최초의 범세계적 국제협약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례를 찾기 힘든 독일 히틀러 정권의 조직적인 문화재 약탈과 참혹한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의 경험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문화재 보호와 반환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국제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1943년의 <런던선언(The 1943 Declaration of London)>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나치에

10) Kowalski, “Types of Claims for Recovery of Lost Cultural Property”, pp.88-89.

11) Richard Pankhurst, “The Case for Ethiopia”, *Museum* 149 (1986), 58; Miles, *Art as Plunder*, pp.343-348.

12)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은 국내에서 ‘대영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번역어가 정착된 것으로 원 명칭에는 ‘대(great)’라는 표현이 없다. 최근 국내 영국사학계에서는 ‘대영박물관’이 제국주의 시대를 환기시키는 단어이며 원 명칭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영국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의한 약탈품 반환이 주요 목표였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박물관과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합군의 특수부대인 ‘기념물, 미술품, 기록물 전담반(Monuments, Fine Arts and Archives, MFAA)’이 출범했다. 이 부대의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구제하는 것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을 통해 문화재 약탈의 비도덕성과 반환의 당위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재 반환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며 이후 문화재 보호 활동과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¹³⁾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United Nations, UN)으로 개편된 국제사회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적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46년 교육, 문화, 과학의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 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를 창설했다. 이후 문화재와 관련한 국제법들은 유네스코의 주도로 입안되었다. 유네스코는 양차대전을 겪으며 경험했던 기존의 전시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와 비현실적 요소를 개선하고 새 시대에 걸맞은 전시 문화재 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은 1949년 공식 회의를 열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과 초안 수정 과정을 거쳐 1954년 최종적인 국제협약을 발표했다.¹⁴⁾ 이 국제협약이 바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법인 <헤이그 협약>이다.

<헤이그 협약>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논의되어 온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흔히 1863년의 리버법전(Lieber Code)이라고 불리는 <야전에서의 미합중국정부군에 대한

13) Charles J. Kunzelman, “Some Trials, Tribulations, and Successes of Monuments, Fine Arts and Archives Teams in the European Theatre During WWII”, *Military Affairs* 52 (1988), pp.56-60.

14) O'Keef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Armed Conflict*, pp.92-94.

지침(Instruction for Government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1874년의 <브뤼셀 선언(Brussels Conference)>, 그리고 1899년과 1907년에 발표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s)>에 포함된 문화재 보호관련 조항들이 1954년 <헤이그 협약>에 포함되었다. 특히 뢰리히 규약(Roerich Pact)이라 불리는 <예술적, 과학적 기관과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Protection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Historic Monuments)>은 역사적 기념물과 박물관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문화재 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1954년의 협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¹⁵⁾

이러한 과정을 거친 <헤이그 협약>은 개별 유물들 뿐 아니라 그 유물들을 전시 보관하는 시설과 장소는 물론, 무력충돌에 대비해 문화재를 임시 대피시키기 위한 보호시설까지도 문화재 보호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군에 의한 문화재 보호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시켜 전쟁의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태를 고려하였다.¹⁶⁾ 이 협약은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성문화한 것으로 향후 전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헤이그 협약>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의 무력충돌 현장에서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파괴되고 있다. 1991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Dubrovnik) 구시가지가 유고슬라비아 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824채의 건물 중 반 이상인 563채가 파괴되었다.¹⁷⁾ 1999년 코소보 전쟁 시기에

15) Patty Gerstenblith,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Law*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p.529.

16)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Article 1.

17) 이광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국제적 이행 사례”,

는 민족 간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오스만-튀르크 시대에 건축된 이슬람 사원 116개가 파괴되었고, 세르비아의 그리스 정교 사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¹⁸⁾ 2001년 말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었다.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의 유일신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로켓탄을 이용해 이 석상을 파괴했다. 21세기의 첫 해에 벌어진 이 문화재 파괴 사건은 당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세기부터 이어져온 전쟁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그 협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되돌릴 수 없는 문화재 손실과 훼손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국제법은 그 특성상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의 군대가 특정 시점에 <헤이그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국가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이후 협약을 비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의 분석 사례인 이라크 전쟁 당시의 미국도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다.¹⁹⁾ 따라서 2003년 미군이 <헤이그 협약>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유엔에 의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제법의 구속력이 부재한 상황은 분쟁 지역의 문화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준 국가들 사이에서도 문화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존재한다. 바로 <헤이그 협약> 제4조 2항에 있는 “군사적 필요(military

『인도법논총』 33집(2013), pp.154-165.

18) Michael A. Sells, “The Construction of Islam in Serbian Religious Mythology and Its Consequences”, Maya Shatzmiller, *Islam and Bosnia: Conflict Resolution and Foreign Policy in Multi-ethnic States*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Press, 2002), pp.72-73, 84-85.

19) 미국이 <헤이그 협약>에 비준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8년이고, 유네스코에 정식 등록된 것은 2009년이다.

<http://www.unesco.org/eri/la/convention.asp?KO=13637&language=E> (접속날짜 2018. 6. 5.)

necessity)” 조항의 불명료성 때문이다. 원문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의무는 군사적 필요가 [문화재 보호와 존중의 의무] 포기를 긴급히 요구할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이다.²⁰⁾ 이 조항이 포함된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존중’이란 협약 체결국들이 자국 영토의 것은 물론 다른 체결국들의 영토 내에 있는 문화재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체결국들은 적국일지라도 문화재와 유적지를 훼손할만한 공격행위를 피해야 하며, 방어하는 측도 문화재와 그 인접지역을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군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야한다.

그러나 이 존중의 의무는 제4조 2항의 “군사적 필요” 때문에 실전에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되었다. 여기서 군사적 필요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급히 혹은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긴급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는 조건이 문화재 보호의 의무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군사적 필요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²¹⁾ <헤이그 협약>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문화재에 대해 군사적 필요를 제한하는 여러 제한요건들을 부가했지만, 전시에 군사적 필요로부터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있을 만큼 절대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군사적 필요의 성립 조건인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는 군사령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²²⁾

<헤이그 협약>의 또다른 결정적 한계는 비준국의 일원이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국제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

20)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Article 4-2.

21) Caroline Ehlert, *Prosecuting the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 2014), 52-54; Stanislaw E. Nahlik,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Armed Conflicts”, *Hastings Law Journal* 27 (1976), p.1085.

2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Article 11-2.

이 처벌하지 않으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국제법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법 비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위반자의 처벌이 경우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데다, 비준을 했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1954년 헤이그 문화재보호협약 제2의정서(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이하 제2의정서)>가 1999년에 체결되었다. <제2의정서>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면제가 불가능한 “강화된 보호(enhanced protection)”를 받는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의정서> 12조에 따르면 군사적 필요가 적용될 수 있는 기존 <헤이그 협약>의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와는 달리 “강화된 보호”하의 문화재는 해당 문화재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적 필요에 따른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²³⁾ <헤이그 협약>의 결정적 한계였던 범위반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도 강화함으로써 중요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²⁴⁾ 또한 당사국들 간의 보편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중요 범죄에 대해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²⁵⁾

이처럼 <헤이그 협약>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됨으로써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제2의정서> 또한 국제법

23)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rticle 13; 김현주,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제정 배경과 발전”, 『인도법논총』 33집(2013), pp.109-112.

24)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rticle. 15.

25) Ibid., Article 16.

의 특성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즉, <제2의정서>까지 비준하지 않으면 <헤이그 협약>을 비준했다 하더라도 위의 보완적 조항들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헤이그 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는 134개국 이지만, 이 중 <제2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38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2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더 강화된 규제력으로 인해 자국의 군사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또한 2008년에 <헤이그 협약> 비준을 결정했지만,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고 수많은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제2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3. 미국의 전시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 육군 야전교범 (FM 27-10)을 중심으로

19세 말,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들에 비해 뒤늦게 중동 지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문화재 수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흔히 ‘실크로드’라 불리는 중앙아시아의 과거 교역로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들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실크로드 유물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고대 이집트 유적지 발굴과 중동 지역에서의 일명 ‘성경 고고학’이라 불리는 발굴 작업에도 대학 연구단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고고학 발굴에 관한 관심은 미국 내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단지 재화(財貨)의 일종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전반기 두 번의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의 문화유산을 거리낌 없이 약탈해왔던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 처음으로 자국의 문화재가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경험

을 하면서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본토는 양차 대전에 의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유럽과 달리 미국의 물질 유산은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미국은 1954년 <헤이그 협약>의 가입 필요성에 대해 유럽 국가들과 온도차를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새로운 세계체제의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또한 해외 분쟁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견했고, 이에 따라 군사 활동을 펼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조항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군의 작전 수립이나 전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소였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에 더하여, 군사 활동의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헤이그 협약> 가입에 별다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발칸 반도와 중동에서 벌어진 연이은 군사적 분쟁에 따른 문화재 파괴 사건을 통해 미국은 <헤이그 협약> 기준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경험은 미국이 더는 기준을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²⁶⁾ 결국 2008년 미 의회의 기준을 거쳐 미국은 2009년 유네스코에 <헤이그 협약> 비준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2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군사적 필요’에 의한 다양한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이다. 비록 미군의 군사교범이나 작전법(Operational Law) 등에는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의 문화재 보호 방안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문화재 보호에 관한 미군의 대응은 여전히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불분명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26) Girstenblith,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Law: Cases and Materials*, pp.535-537.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에 관한 미군의 행동 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으며 내포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미군의 FM 27-10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²⁷⁾ 우선 FM 27-10에서 드러난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문구의 불명료성에서 파생되는 조항의 모호성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에 대한 미군의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이다.

가. 조항의 모호성

미군의 군사교범은 기본적으로 작전 수립과 전투 수행이라는 군의 가장 기본적 행위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군의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이 중 문화재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해석되는 것은 FM 27-10의 2장 ‘교전’의 45항에 나타난 모호한 표현 때문이다.

포위나 폭격의 상황 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종교, 예술, 과학적으로 중요한 건물, 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역사적 기념관, 병원, 그리고 병자나 부상자가 모여 있는 장소들은 모든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as far as possible) 보존되어야 한다.²⁸⁾

이 “가능한 한”이라는 한정적 문구는 <헤이그 협약>에 포함되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군사적 필요’라는 표현과 유사한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위의 조항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라 할지라

27) FM 27-10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시 국제법(Law of War)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기초한 미군의 전시 행동 강령과 규칙을 정리한 것으로 1956년에 만들어져 1976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후 지금까지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미군의 가장 중요한 군사교범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에 명시된 문화재 보호 관련 지침은 미군의 문화재 대응방식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8) Field Manual 27-10, ch. 2, ph. 45(a).

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면’ 부득이하게 폭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며, 문화재에 공격을 가하지 않고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에 오롯이 맡겨지게 된다. 이 때문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1890-1969)의 지적처럼 ‘군사적 필요’의 본래 취지인 군사적 긴급함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이 “군사적 편의”나 “직무태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²⁹⁾ “가능한 한”이라는 문구는 1874년의 브뤼셀 조약과 1907년의 헤이그 협약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시대에 뒤쳐진 백 년 전의 이 문구를 현대전에서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2009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필요’의 요건을 제한하는 <제2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능성의 문제를 개별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군사적 편의, 더 나아가 보호 대상 감별과 군사적 긴급성을 판단하는 근거인 정보 수집에 대한 직무 태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미군의 교전 조항의 수정을 주장하는 고고학자나 국제법 학자들은 장기적인 차원의 법적·행정적 조치 이외에도 조항의 모호성을 단시간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공격을 허가할 수 있는 지휘관의 직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이는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든 문화재의 특성상 군사적 공격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방안이다. 2003년 미 국방부의 한 법무관은

29) AMERICAN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AND SALVAGE OF ARTISTIC AND HISTORIC MONUMENTS IN WAR AREAS, REPORT 48 (1946). John Henry Merryman, “Two Ways of Thinking about Cultural Proper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0 (1986), 838에서 재인용.

30) Matthew D. Thurlow,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in Iraq: How American Military Policy Comports with International Law”, *Yal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Law Journal* 8 (2005), p.170.

이에 대해 펜타곤과 백악관은 이라크 전쟁 시 유적지에 대한 공격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펜타곤이나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문화유산을 공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³¹⁾

또 다른 표현의 모호성은 바로 미군의 작전법 편람(Operational Law Handbook)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이 적용된 FM 27-10의 2장의 41항에서 나타난다.³²⁾ 이 작전법 편람 1장 ‘무력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무력 사용의 전제 조건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공격 시 수반되는 예상 피해가 [공격 시] 기대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concrete and direct military advantage)을 초과한다면 지휘관에게 공격을 중지하는 것을 요구한다.³³⁾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 행위가 군사적 목적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한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조항이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일종의 인도주의적 조항이지만, 이 역시도 예상되는 피해와 군사적 이점 사이의 비례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산정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점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가 예상 피해를 밀도는 것인지를 기준이 없다. 이와 같은 맥락의 조항이 FM 27-10의 2장 41항 ‘불필요한 살인과 파괴’에도 명기되어 있다.

31) 이는 법학자 매튜 써로가 2003년 6월 미 국방부 법무관과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 중 일부이다. Thurlow,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in Iraq”, p.170.

32) 작전법 편람이란 전시, 평시를 통틀어 군의 작전 수립 및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군사 행위와 관련한 국내·국제법을 정리한 일종의 안내서이다. 따라서 여기에 기재된 조항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미군 군사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기준의 역할을 한다. Operational Law Handbook, 17th Edition(2017), Preface.

33) Ibid., p.11.

계획을 세우거나 공격 결정을 하는 사람은 목표물이 군사적 목적이나 방어 장소로 식별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목표물이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비교하여] 불균형한(disproportionate) 인명 피해와 재산(property)의 피해 없이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³⁴⁾

다시 말해, 이 조항 또한 인명이나 물질 재산의 손실 정도와 군사적 이점의 정도를 비교하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인명의 우선적 보호에 관해서는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격목표 주변 혹은 목표물 자체가 문화재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피해와 군사적 이점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 이점과 비교하여 “불균형한” 재산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반대로 균형 잡힌 무력사용이란 개념이 무엇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군의 목표물이 중요한 유적지에 자리 잡고 있다면, 군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얼마나 규범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군의 군사교범의 수정을 주장하는 법학자 매튜 쉐로(Matthew D. Thurlow)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지휘관은 위협적인 탱크 한 대, 혹은 세 명의 [적]군들의 존재 때문에 현지의 모스크를 파괴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국민적인 성지도? 국립박물관도?”³⁵⁾ 이러한 위협성이 FM 27-10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에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이에 따른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적 이점 혹은 군사적 편의가 다시는 재건할 수 없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4) Field Manual 27-10, ch. 2, ph. p.41.

35) Thurlow,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in Iraq”, p.172.

나. 문화재에 대한 미군의 인식

FM 27-10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별개의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적 인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FM 27-10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의 위치는 문화재에 대한 미군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6장 ‘점령’에 포함된 405항을 살펴 보자.

도시, 종교, 자선, 교육,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재산은 사유재산과 같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기관들, 역사적 기념물, 예술 작품들에 대한 모든 강탈이나 파괴, 혹은 의도적인 손상은 금지되며, [행해지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³⁶⁾

이 조항을 보면 문화재가 사유재산과 거의 동급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문화재로 분류되는 것들을 “사유재산과 같이” 다루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미군이 과연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지점이다. 이는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가늠하여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상징성은 사유재산과는 달리 파괴되면 복구나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가치는 여타 재화처럼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에 대한 미군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의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3년 4월 11일, 럼스펠드는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문화적 약탈을 미군이 방관했다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의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36) Field Manual 27-10, ch. 6, ph. p.405.

(Stuff Happens).”³⁷⁾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방어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대대적인 약탈 사태를 점령군인 미국이 막지 못한 사태에 대해 해명하기에는 분명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³⁸⁾ 전쟁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물리적 손실들과 문화재의 가치를 동등하게 위치시킨 이 발언은 FM 27-10의 위의 조항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국제사회는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문화재는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성립되었다. 이 405항은 이제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눈높이에도 맞추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FM 27-10에의 몇몇 조항들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은 근본적으로 미군의 군사교범이 인도주의적 목표보다는 기능적 목표 달성을 중시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라크는 함락했지만 바그다드 약탈을 방관한 미군의 모습은 작전법 편람에 명시된 기능적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작전법 편람 2장에는 전쟁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인명 보호와 평화의 재건이 포함된 “인도주의적 목표”이고, 두 번째가 “기능적 목표”인데 여기에는 질서와 원칙의 확립, 국·내외적인 대중의 지지 유지가 포함되어 있다.³⁹⁾

인명은 물론이고 넓은 의미에서 문화재의 보호가 인도주의적 목표에 포함된다면, 미군의 “근본적인” 전쟁의 목표 중 하나는 이라크 전쟁 초기에 이미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기능적 목표”는 달성했을까.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미군은 미국 국

37) Saloni Marthur, “Art and Empire: On Oil, Antiquities, and the War in Iraq”, *New Formations Issue 65* (2008), p.129.

38) 럽스펠드의 이 발언은 언론뿐 아니라 관련 학문의 학자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대중들에게는 마치 일종의 유행어처럼 회자되었다.

39) Operational Law Handbook, p.9.

내의 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바그다드 약탈과 뒤이어 계속된 이라크 전역에서 일어난 유적지 훼손과 파괴는 결과적으로 점령군인 미국이 질서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바그다드에서의 소요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미군이 자신들의 질서와 원칙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2007년 5월 4일, 이라크박물관에 있는 내 사무실에 한 미군 호송대가 도착하여 박물관 구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들은 문을 부셨고 내가 또 다시 막아서자 아랍어로 쓰인 서명이 누락된 이상한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그 편지는] 이들이 미국 대사관 소속이며 그들에게는 박물관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 내가 이 문서로는 불충분하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나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건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이라크박물관을 또다시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유네스코에 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자 그제야 그들은 사라졌다.⁴⁰⁾

이는 이라크 출신 고고학자이자 2006-2007년에 걸쳐 이라크의 고 유물과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었던 알-후사이니(Abbas Al-Hussainy)의 경험담이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후 질서 파괴와 약탈의 책임에서 미국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 유출 사태는 미군에 간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었다.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지하거래로 인한 수익이 테러 단체의 자금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⁴¹⁾ 바그다드 약탈로 인해 약 15,000점으로 추정되는 중요 문화재들이 분실되었고, 이라크 국민들의 노력으로

40) A. Al-Hussainy, and R. Matthews, The Archaeological Heritage of Iraq in Historical Perspective. *Public Archaeology* 7 (2008), pp.91-100. Hamilakis, The “War on Terror” and the Military-Archaeology Complex, 47-48에서 재인용.

41) 문화재 거래는 암시장에서 마약과 무기 거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재 약탈과 매매의 악순환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Mathur, “Art and Empire”, pp.130-131.

되돌아온 2,000여점의 유물을 제외하고 분실된 나머지 유물들은 현재까지도 행방이 불분명하다. 전시 체제에서 고고학자가 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조리스 킬라(Joris Kila)와 같은 고고학자는 바그다드 약탈 사태를 막는 것은 반군이나 테러 단체의 자금원이 될 수 있는 문화재의 유출과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문화재 보호가 전력증강자(戰力增強者, Force Multiplier)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군에 조언했다.⁴²⁾ 이러한 주장은 미군 작전법 편람이 규정한 전쟁법의 목적을 “근본적인” 것이라고 명시한 것에 따라, 점령지의 문화재 보호가 “인도주의적 목표”뿐 아니라 “기능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넓게는 문화재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군의 인식을 확대하고, 좁게는 교범이 기준으로 정한 인도주의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FM 27-10의 불명확한 표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재 파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군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군사교범 자체의 한계가 실전에서 미군의 그릇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는 여러 법리적 경우들이 반드시 실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법과 군사교범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적 보완작업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문화재를 둘러싼 다양한 위험 상황은 군 지휘관들의 작전 계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문화재 보호 규범이 존재한다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화재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혹은 이론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2) Kila,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Military Operations”, pp.324, 331.

4. 군사-고고학 복합체(military-archaeology complex)와 미국의 19세기식 제국주의의 유산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야기된 이라크의 문화재 파괴와 약탈 사건은 이미 있어왔던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문제와 이를 위한 고고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분수령이 되었다. 중요한 역사 유적지와 유물이 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라크의 특성상 미군은 이미 이라크 침공 전에 고고학자들과 문화유산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공격 시 피해야할 지점, 보호해야 할 건축물의 목록까지 작성했다. 미군이 이렇듯 군사작전을 짜는데 있어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에 새롭게 도입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향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전환”이란 점령뿐 아니라 그 이후의 작전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점령지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⁴³⁾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 학자들과 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앞 장에서 살펴본 FM 27-10의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음에도 미군의 “문화적 전환”은 이라크 전쟁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 사례를 통해 전쟁에 고고학자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이 직업윤리에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물리적 훼손의 위협에 놓인 문화재를 두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동안 전쟁 행위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규칙들에 대한 논의는 국제법학자들의 몫이었고, 실제

43) Roberto J. González, “Towards Mercenary Anthropology? The New US Army Counterinsurgency Manual FM 3-24 and the Military-Anthropology Complex”, *Anthropology Today* 23 (2007), pp.17-18.

전시(戰時)에 그것을 실행하고 무력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군대였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 적용된 미군의 “문화적 전환”은 전시 고고학자의 역할에 대한 찬반 논쟁을 낳았고, 이는 고고학이 지닌 19세기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태생적 역사와 더불어 21세기 고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고고학의 성장 배경에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서구 열강들의 문화재 수집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영국과 프랑스 같이 정복 전쟁을 펼친 제국들의 강력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이 가치중립적인 학문의 주체로 활동한 것이 아닌, 제국의 식민 활동의 첨병이자 수혜자였다는 고고학사에 대한 고고학계의 자기 성찰적 연구 경향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전쟁과 제국, 고고학의 관계를 역사적 차원에서 되돌아보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이라크는 이 역사적 사례들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우선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군대와 동행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의 시초는 바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1798-1801)이었다. 나폴레옹은 유럽사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문화재의 역사에도 큰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주변 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주요 예술품을 약탈했고, 이러한 행위는 유럽인들에게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그는 이집트 원정에 약 17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학자단을 동행시킴으로써 이집트의 역사, 문화, 지리 등을 연구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고대 이집트 유물들을 획득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까지 유럽의 전쟁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듯 학자가 동행하여 점령지의 문화와 역사를 조사하고 그곳의 유물들을 수집하는 방식은 이후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 정책이 활

발해지면서 지배 방식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후 지배의 형태가 직접적인 영토 점령에서 제국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지배로 확장되면서, 전통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인들이나 학자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고고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⁴⁴⁾ 이제 고고학적 활동은 단순히 고유물 수집과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영토 지배를 비군사적 방법으로 공고히 하는 하나의 지배 수단이 되었다. 이라크가 속한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의 보고가 된 데에는 고대문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유럽인들에 의해 재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고고학 활동이 지배수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서양이 동양인들은 보호하지 못하는(혹은 하지 않는) 고대문명의 수호자이자 구원자라는 일종의 문명화 사명이라는 담론이 작용했다. 즉, 동양인(식민지인)은 고대 문명의 가치를 알아볼 지식도 그것을 연구할 능력이 없어서 위대한 인류의 유산이 위협에 처했지만, 그것을 우월한 지적능력과 힘을 가진 유럽인들이 구제하고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지식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에 대한 유럽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고고학은 이처럼 서구 제국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서구 국가들이 동양의 문화재 수집에 군대까지 동원한 이유도 문화재가 제국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전달자였기 때문이었다.⁴⁵⁾ 석유가 중요 자원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중동 지역은 유럽 국가들에 의한 문화재 쟁탈전의 중심지였다.⁴⁶⁾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문화재 보호의 방식과 이에 대한 인

44) St. John Simpson, "From Persepolis to Babylon and Nineveh: The Rediscovery of the Ancient Near East", Kim Sloan, ed., *Enlightenment: Discovering the World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British Museum, 2004), pp.192-201.

45) Holger Hoock, "The British State and the Anglo-French Wars over Antiquities, 1798-1858", *The Historical Journal* 50 (2007), pp.49-72.

46) Lawrence Rothfield, *The Rape of Mesopotamia: Behind the Looting of the Iraq Museum*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ch. 1.

식은 지난 제국주의 시대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보여준 고고학을 통한 지배 전략과 이념적으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우선 고고학자가 정복 전쟁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점은 이라크 전쟁에 등장한 고고학자의 참여와 유사하다. 시대 상황이 다른 만큼 그 역할도 달라졌지만 전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고학이 이용된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고고학자 야니스 하밀라키스(Yannis Hamilakis)는 고고학자와 군의 협력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라크 전쟁은 본 목적이었던 문화재 보호에는 실패했지만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군사화된 고고학, 즉 “군사-고고학 복합체(military-archaeology complex)”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⁴⁷⁾

그렇다면 이 군사-고고학 복합체의 문제는 무엇일까? 고고학자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군사-고고학 복합체의 문제는 20세기 중반 이전 고고학이 비판받은 제국주의적 행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고고학 협력체가 고고학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든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이 협력 체제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문화재를 걱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군사-고고학 복합체에서 생산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⁴⁸⁾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은 물론이고, 전쟁 행위 자체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반대 의견은 군사-고고학 복합체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고고학의 제국주의적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수정주의 고고학⁴⁹⁾의 전제는 고고학은 본질적으로 컨텍스트(context)의 학문이라는 것이

47) Hamilakis, “The “War on Terror” and the Military-Archaeology Complex”, p.51.

48) Alexis Jordan, “Embedded Archaeology, Cultural Heritage, and the Iraq War”, *Journal of Collegiate Anthropology* 3 (2012), pp.14-16.

49) 20세기 후반에 수정주의 고고학이 등장한 데에는 1990년의 걸프전에서 벌어진 메소포타미아 유적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에 의한 문화재 파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었다.⁵⁰⁾ 즉, 고고학은 그것이 실행되는 사회적 환경과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할 수 없으며, 그 사회를 움직이는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고고학 복합체에서는 그 집단의 작동 원리에 따라 고고학자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양상을 고고학계는 이미 19세기에 경험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축인 아시리아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했던 영국의 오스틴 레이어드(Austen Henry Layard, 1817-1894)는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영국 대사였던 스트랏포드 캐닝(Stratford Canning, 1st Viscount Stratford de Redcliffe, 1786-1880)의 도움을 받아 통행증과 발굴허가권,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 레이어드가 영국 고고학에 남긴 찬란한 업적은 당시 중동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위협을 경계하고 아시아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영제국의 기획이 낳은 결과였다. 레이어드는 고고학적 활동을 수행했으나 그의 정체성은 영제국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에 가까웠다.⁵¹⁾ 레이어드는 고고학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컬렉션을 영국박물관에 제공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고고학 발굴 과정이 중동의 지정학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고고학은 이후 영국이 이 지역을 위임통치하게 되는 정치적 기반을 닦아준 것과 마찬가지로였다.⁵²⁾

두 번째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고고학자들이 미군에 조언한 보호해야 할 유적과 건축물 목록의 선정 기준이다. 보호해야 할 중요 유

50) 고고학자 마이클 쉹크스(Michael Shanks)의 “[고고학자가 하는 일은] 살아남은 유물로부터 과거를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것 보다, 재맥락화(recontextualisation)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고고학의 콘텍스트를 강조했다. Mike Pearson and Michael Shanks, *Theatre/Archaeology* (New York: Routledge, 2001), p.11.

51) Shawn Malley, *From Archaeology to Spectacle in Victorian Britain: The Case of Assyria, 1845-1854* (Farnham: Ashgate, 2012), pp.31-37.

52) Shawn Malley, “Layard Enterprise: Victorian Archaeology and Informal Imperialism in Mesopotamia”,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40 (2008), p.640.

적지는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의 문제는 서구를 대변하는 미국이 서구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라크 영토 내에는 서구인들이 유럽 “문명의 요람”으로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재가 많다. 특히 바빌론과 아시리아 유적은 구약 성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슬람 시대에 동서무역을 중개하는 지역이었던 이라크는 이슬람 문명의 유적과 자료들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미군은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실제 군사-고고학 복합체에서 작성한 문화재 보호 목록에는 몇몇 “메소포타미아적이지 않은”, 즉 이슬람 시대의 문화재가 배제되어 있었다.⁵³⁾ 모두 서구인들로 구성된 이 군사 협력 체제에서 이라크의 문화유산 중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유적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 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목록은 미군의 공격 목표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국 군대를 위해 일하는 미국 고고학자들이 전략적 이점을 위한 공격 지점 선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략적 이점과 문화재의 중요성이 충돌할 때 군 내부에서 학문적 발언에 힘이 실리기 힘들다는 점은 군사-고고학 복합체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학문의 정치화 혹은 고고학의 군사화로 인해 문화재의 중요도를 힘과 이데올로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초 팔레스타인 고고학의 발전 과정과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23년부터 영국의 위임통치하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고고학 활동은 성서 시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연구 주체였던 유대-팔레스타인 탐사 협회(Jewish Palestine Exploration Society, 현재는 Israel

53) Peter Stone,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Iraq Conflict: A Peculiarly English Tale”, *Antiquity* 79 (2005), p.3.

Exploration Society)는 영국의 제도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영국의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⁵⁴⁾ 벨푸어 선언과 더불어 성서 고고학 지원등과 같은 영국의 친 유대 정책은 유대 세력의 전쟁 지원을 얻어내고, 궁극적으로 중동에 유대인 국가를 세워 이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 영국의 정치적 계산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이슬람 시대 유적은 영국과 유대인이 주도하는 고고학 발굴에서 배제되었다.⁵⁵⁾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군사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러한 선택적 고고학은 21세기 이라크 전쟁 시 보호 문화재 선정과 전략폭격 목표물 선정에 참여한 고고학자들의 선택 기준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이전 시대 고고학의 제국주의 권력과의 결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과연 이런 방식이 궁극적 목표인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보호할 문화재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라크의 중요 문화재를 모두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직인 군사-고고학 복합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특정 문화재가 보호되는 동시에, 매일 또 다른 문화재들이 파괴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라크 고고학자 자이납 바라니(Zainab Bahrani)는 콜롬비아 대학 강연에서, 이라크 전역이 세계문화유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선별하는 전략폭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⁵⁶⁾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가진 이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들은 문화재 보호보다 미군의 군사 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 군이 미

54) Nadia Abu El-Haj, "Producing (Arti) Facts: Archaeology and Power during the British Mandate of Palestine", *Israel Studies* 7 (2002), pp.34, 36.

55) El-Haj, "Producing (Arti) Facts", p.46.

56) Zainab Bahrani, Video at the Columbia University Web site, 2003.
<http://www.columbia.edu/> (접속날짜 2018.6.11.)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유적지를 전투 기지나 무기 보관소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군 또한 사마라나 바빌론과 같은 고대 도시들을 군사기지로 이용하여 심각하게 훼손시켰다.⁵⁷⁾

물론 이 협업 체제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고고학자와 군의 노력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반환되고 보호되었다고 반박했으며, 이 또한 사실이다.⁵⁸⁾ 고고학자가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군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시 상황에서는 군대만이 유적지에 접근할 수 있는 특성상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통해 향후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고고학과 군의 협업이 궁극적으로 군의 전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군의 인식을 바꾸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재 보호는 테러 단체의 자금원이 되는 문화재 약탈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증강자의 역할을 하며 군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작전 지역 문화재에 대한 존중은 곧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점령지는 물론이고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어 전쟁의 “근본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⁹⁾ 이렇듯 문화재 보호가 단순히 학술적, 인도주의적 행위가 아닌 일종의 군사적 행위로 설명되는 것은 문화재 또한 현대

57) 이광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국제적 이행 사례”, 157-158; Zainab Bahrani, “Babylon: A Case Study in the Military Occupation of an Archaeological Site”, N. Agnew and J. Bridgland, eds., *Of the Past, for the Future: Integrating Archaeology and Conservation*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6), pp.240-246.

58) “Many Iraqi Artifacts Found, but Many Still Missing”, *DoD News*, 10 September, 2003. <http://archive.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28496> (접속날짜 2018.6.10.)

59) Kila,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Military Operations”, pp.323-324.

전의 특징 중 하나인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fare)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고고학 복합체를 지지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문화재 파괴와 약탈의 역사에 근거하여 비판받는 것은 결국 이 협업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보다 미군의 군사 작전을 수월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쟁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의 그러한 속성은 이미 유엔의 전쟁 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데서 시작되었으며, 이 전쟁은 그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혹은 불순하다는 이유로 세계 언론과 지식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미국 정부의 즉각적 대응 중 하나가 2004년 12월 7일, 미 의회가 이라크 문화재 긴급보호법(Emergency Protection for Iraqi Cultural Antiquities Act)을 가결한 것이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3년 5월, 이란과 쿠웨이트 지역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와 반환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유엔이 국제법과는 달리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보호 조치를 결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⁶⁰⁾ 유엔과 미국의 이러한 전격적 대응은 이라크 전쟁에 적용되었던 군사-고고학 복합체가 문화재 보호에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결국, 미군이 주도한 “문화적 전환”의 한 방식이었던 군사-고고학 복합체는 이라크 전쟁에서 최소한 성과와 향후 가능성은 남겼지만, 공격을 해야 하는 전쟁의 속성과 그에 따른 문화재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예가 되었다. “문화적 전환”은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재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고고학을 침략의 첨병으로 활용했던 19세기식 제국주의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미국은 도덕적 손상은 입었을지언정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60) Lyndel V. Prott, ed., *Witnesses to History: A Compendium of Documents and Writings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Paris: UNESCO, 2009), p.37.

는 석유 문제와 관련하여 실리를 얻었다.⁶¹⁾ 미국은 문명국가로서 최소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며 문화의 수호자이자 정의로운 국가라는 상징적 지위를 얻고자 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신제국주의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바그다드 약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군과 고고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쟁 이전 미군은 점령지 혹은 작전 지역에서 현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전투를 위한 전략적 이점이 될 뿐 아니라 전후 현지인들과의 원활한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문화적 전환”이란 개념을 군에 도입했다. 여기서 탄생한 군사-고고학 복합체는 특정 문화재를 보호하고 약탈된 문화재를 반환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FM 27-10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군의 문화재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전쟁의 기능적 목표만을 중시여기는 태도는 이라크 전쟁 동안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파괴되고 약탈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내재된 국제법의 한계와 그것에 영향을 받은 군사교범의 한계, 그리고 이들의 한계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61) 이라크 전쟁 초반인 2003년 6월, 독일의 언론인 파울 볼프비츠는 미국에게 있어 이라크가 북한과 다른 이유는 이라크는 “석유의 바다에 떠있는 나라”이고, 북한은 “경제 붕괴 직전인 나라”라고 언급한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근거로 이라크 전쟁은 석유 때문이라는 기사를 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A Nasty Slip on Iraq”, *The Guardian*, 3 June, 2003.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문화재 보호의 방식과 고고학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라크 전쟁을 통해 지적하였다. 이는 결국 <헤이그 협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한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 미군의 FM 27-10이 그 한계를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는 점을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이 19세기 제국주의의 성격을 답습하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라크 전쟁 사례는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헤이그 협약>과 <제2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이 군사 작전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국군의 군사 작전이 미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전시 협약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가입이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2월부터 우리 정부는 <헤이그 협약>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⁶²⁾ 우리나라는 언제든 군사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약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할 입장에 있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여론에 발맞춰 국내외적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소외되어 왔던 전시 문화재 보호 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⁶³⁾ 문화재는 역사의 산물이고 문화재를 존중하는 것

62) 나종남, 『미래 한반도 군사분쟁에 대비한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예술시설 보호 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p.11-12.

63) 우리나라에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내법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국내외적 무력충돌 시 역사적 기념물을 공격하는 행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군인복무규율이 있으며, <민사작전(야전 교범 31-2)>에서는 무력충돌 시 국방부가 문화재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군인들이

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 군이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미군의 전시 문화재 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7. 9, 심사수정일 : 2018. 8. 15,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이라크 전쟁, 1954년 헤이그 협약, 전시 문화재 보호, 육군야전 교범 (FM 27-10), 군사-고고학 복합체

국제적 기준인 전쟁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 Ibid., pp.47-49.

<참 고 문 헌>

1. 1차 연구사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1999).

Instruction for Government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1863).

Department of the Army, Field Manual 27-10: The Law of Land Warfare 1956(revised 15 July, 1976).

United States Army, Operational Law Handbook, 17th Edition(2017).

2. 2차 연구사료

- 단행본

Bahrani, Zainab, “Babylon: A Case Study in the Military Occupation of an Archaeological Site”, N. Agnew and J. Bridgland, eds., Of the Past, for the Future: Integrating Archaeology and Conservation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6), 240-246.

Diaz-Andreu, M., A World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Archaeology: Nationalism, Colonialism, and the P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Ehlert, Caroline, Prosecuting the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 2014).

Gerstenblith, Patty,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Law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International Treaties of Armed Force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n Times of Armed Conflict,”

- in Laurie Rush, ed. *Archaeology, Cultural Property, and the Military* (Woodbridge: Boydell Press, 2010).
- Malley, Shawn, *From Archaeology to Spectacle in Victorian Britain: The Case of Assyria, 1845–1854* (Farnham: Ashgate, 2012).
- Miles, Margaret M., *Art as Plunder: The Ancient Origins of Debate about Cultural Proper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Pearson, Mike and Shanks, Michael, *Theatre/Archaeology* (New York: Routledge, 2001).
- Prott, Lyndel V. ed., *Witnesses to History: A Compendium of Documents and Writings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Paris: UNESCO, 2009).
- Reid, Donald M., *Whose Pharaoh? Archaeology, Museums, and Egyptian National Identity from Napoleon to the First World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Rothfield, Lawrence, *The Rape of Mesopotamia behind the Looting of the Iraq Muse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Sells, Michael A., “The Construction of Islam in Serbian Religious Mythology and Its Consequences”, Maya Shatzmiller, *Islam and Bosnia: Conflict Resolution and Foreign Policy in Multi-ethnic States*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Press, 2002).
- Simpson, St. John, “From Persepolis to Babylon and Nineveh: The Rediscovery of the Ancient Near East”, Kim Sloan, ed. *Enlightenment: Discovering the World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British Museum, 2004).
- Tamima, O., “Mourad, An Ethical Archaeology in the Near East: Confronting Empire, War and Colonisation”, Yannis Hamilakis and Philip Duke eds., *Archaeology and Capitalism*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2007), 151–168.
- Teijgeler, Rene,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in Times of Conflict”, G.E. Gorman and Sydney J. Shep, eds., *Preservation Management*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London: Facet Publishing, 2006), 133–165.

Toman, Jiri, *Cultural Property in War: Improvement in Protection* (Paris: UNESCO Publishing, 2009).

나종남, 『미래 한반도 군사분쟁에 대비한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예술시설 보호 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논문

Curtis, John, “Relations between Archaeologists and the Military in the Case of Iraq—Reply to Price”, *Papers fro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19 (2009): 2–8. DOI: <http://doi.org/10.5334/pia.316>.

El-Haj, Nadia Abu, “Producing (Arti) Facts: Archaeology and Power during the British Mandate of Palestine”, *Israel Studies* 7 (2002): 33–61.

DOI: <https://doi.org/10.1353/is.2002.0012>

González, Roberto J., “Towards Mercenary Anthropology? The New US Army Counterinsurgency Manual FM 3–24 and the Military–Anthropology Complex”, *Anthropology Today* 23 (2007): 14–19.

DOI: <https://doi.org/10.1111/j.1467-8322.2007.00511.x>

Hamilakis, Yannis, “Iraq, Stewardship and ‘the Record’: An Ethical Crisis for Archaeology, Public Archaeology”, *Public Archaeology* 3 (2003): 104–111.

DOI: <https://doi.org/10.1179/pua.2003.3.2.104>

---, “The “War on Terror” and the Military– Archaeology Complex; Iraq, Ethics, and Neo–Colonialism”, *Journal of the World Archaeological Congress* 5 (2009): 39–65.

DOI: <https://doi.org/10.1007/s11759-009-9095-y>

Hook, Holger, “The British State and the Anglo–French Wars over Antiquities, 1798–1858”, *The Historical Journal* 50 (2007): 49–72.

DOI: <https://doi.org/10.1017/s0018246x06005917>

- Jordan, Alexis, “Embedded Archaeology, Cultural Heritage, and the Iraq War”, *Journal of Collegiate Anthropology* 3 (2012): 9–23.
http://www.academia.edu/1545225/Embedded_Archaeology_Cultural_Heritage_and_the_Iraq_War
- Kila, Joris 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Military Operations: The Case of Uruk, Iraq”,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13 (2011): 311–333.
DOI: <https://doi.org/10.1179/175355212x13315728646094>
- Kowalski, Wojciech, “Types of Claims for Recovery of Lost Cultural Property”, *Museum* 228 (2005): 85–102.
DOI: <https://doi.org/10.1111/j.1468-0033.2005.00543.x>
- Kunzelman, Charles J., “Some Trials, Tribulations, and Successes of Monuments, Fine Arts and Archives Teams in the European Theatre During WWII”, *Military Affairs* 52 (1988): 56–60.
DOI: <https://doi.org/10.2307/1988039>
- Mathur, Saloni, *Art and Empire: On Oil, Antiquities, and the War in Iraq*, *New Formations* 65 (2008): 119–135.
DOI: <https://doi.org/10.3898/newf.65.08.2008>
- Merryman, John Henry, “Two Ways of Thinking about Cultural Proper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0 (1986): 831–853.
DOI: <https://doi.org/10.2307/2202065>
- Pankhurst, Richard, “The Case for Ethiopia”, *Museum* 149 (1986): 58–60.
DOI: <https://doi.org/10.1111/j.1468-0033.1986.tb00611.x>
- Stone, Pete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Iraq Conflict: A Peculiarly English Tale”, *Antiquity* 79 (2005): 933–943.
DOI: <https://doi.org/10.1017/s0003598x00115054>
- , “Archaeology and Conflict: An Impossible Relationship?”,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11 (2009): 315–332.

DOI: <https://doi.org/10.1179/175355210x12747818485565>

Thurlow, Matthew D.,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in Iraq: How American Military Policy Comports with International Law, Yale Human Rights & Development Law Journal 8 (2005): 153–187.

<http://digitalcommons.law.yale.edu/yhrdlj/vol8/iss1/4>

김현주,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제정 배경과 발전”, 『인도법논총』 33집(2013): 91–117.

UCI: I410-ECN-0101-2015-330-001155257

이광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국제적 이행 사례”, 『인도법논총』 33집(2013), 135–165.

UCI: I410-ECN-0101-2015-330-001155277

3. 신문기사 및 인터넷

“A Nasty Slip on Iraq”, The Guardian, 3 June, 2003.

“Many Iraqi Artifacts Found, but Many Still Missing”, DoD News, 10 September, 2003.

<http://archive.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28496>

(접속날짜 2018.6.10.)

Zainab Bahrani, Video at the Columbia University Web site, 2003.

<http://www.columbia.edu/> (접속날짜 2018.6.11.)

<http://www.unesco.org/eri/la/convention.asp?KO=13637&language=E>

(접속날짜 2018.6.5.)

<Abstract>

The Limits of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of the US in Armed Conflict through the Iraq War and Imperialism

Kim, Kyung-m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in armed conflict have mainly developed in the experience of war. Finally, after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s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aw was enacted that take together the discussions since the end of the war. This is the fir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conflict, which wa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initiated by UNESCO.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destruction and looting of cultural property still have taken place in disputed area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outbreak of the Iraq war, which started with the invasion of Iraq by the US on March 20, 2003, became a crucial reminder of the awareness of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the looting of the Iraqi museum as well as cultural properties throughout Baghdad, the entire world was saddened by the loss of cultural heritage in Mesopotamia, one of the birthplace of civilization. Then, it was internationally criticised that the occupation forces, the US military, stood by and watched the situation.

This essa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1954 Hague Convention, and explores the legal and ethical background of how the US military responded during the Iraq war.

First of all, I will look at the paragraph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Army Field Manual(FM 27-10), the most representative guide of the US military, and point out the limitations. And I will examine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military-archeology complex organized with archaeologists in order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Iraq war, and criticize the false perception of the US military of cultural properties revealed in its limits. Conclusively, pointing out that the attitude toward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21st century US Army is similar to that of the 19th century imperialism, it argues that, like the empires of the past, the US has also treated cultural properties as a superpower.

Key Words : Iraq War, 1954 Hague convention,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in conflict, Army Field Manual, military-archaeology complex